

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

(앞쪽)		
신청인 (대표자)	신청자(공동 설치의 경우 설치 대표자)	주민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
변경사항	변경 내용 (※ 명칭, 목적, 설치자, 위치 중 해당사항 기재)	
	변경 연월일	
	변경 전	
	변경 후	
변경사유	※ 별첨 작성 가능	

「평생교육법」 제38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첨부서류		
변경사항	신청인 제출 서류	담당공무원 확인사항
명칭	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1. 주민등록표 초본(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. 건축물대장 등본 4. 토지대장 등본
목적	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
설치자	이사회 회의록,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
위치	1. 위치도 1부 2. 시설배치도 1부 3.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4. 영 제40조에 따른 교사 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,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